붙임 1 우편상식 수정 사항

□ 29~30페이지

○ 「3. 선납 라벨 서비스」

기존	수정
나. (5) 준등기우편물로 취급 시점 - 창구접수: 우체국 창구 접수 시 - 우체통 투함: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	나. (5) 준등기우편물로 취급 시점 - 창구접수: 우체국 창구 접수 시 - 우체통 투함: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 - **무인접수기 이용: 무인우편접수기 접수 완료 시**
다. 3) 접수채널: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	다. 3) 접수채널: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, **무인우체국**

□ 81페이지

○ 제2절 손실보상제도

기존	수정
1.다. 운송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	1.다. 운송원**이**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

□ 91 · 93페이지

○ 우편물 운송·배달의 우선순위

기존	수정
나.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 2) 2순위: 익일특급우편물, 등기소포우편물(택배포함), 등기통상우편물, 국제항공우편물	나.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 2) 2순위: 익일특급우편물, 등기소포우편물(택배포함), **보통등기 및 준등기 우편물**, 국제항공우편물
다. 배달의 우선순위 2) 제2순위: 일반통상우편물(국제선편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)	다. 배달의 우선순위 2) 제2순위: **준등기우편물**, 일반통상우편물(국제선편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)

□ 119페이지

○ 다. 통관검사대상우편물의 처리

기존	수정
2) 통관대상우편물을 접수 ~ 고무인을 날인	**삭 제**

□ 122페이지

○ 3) 기타

기존	수정
가) 요금납부방법: 현금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, 우표	가) 요금납부방법: 현금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, 우표, **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(전자결제)**

□ 135페이지

○ 제1절 EMS 배달보장 서비스

기존	수정
2. 대상국(10국): 우리나라와 EMS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한 9개 우정청(일본, 미국, 중국, 호주, 홍콩, 영국, 스페인, 프랑스, 태국) 간에 운영되며, 별도 취급수수료는 없음	2. **대상국(11국)**: 우리나라와 EMS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한 **10개** 우정청(일본, 미국, 중국, 호주, 홍콩, 영국, 스페인, 프랑스, 태국, **캐나다**) 간에 운영되며, 별도 취급수수료는 없음
4.(표) 대상지역: 10개 국가 우정당국간 공동시행 - 10개 우정당국이 모든 지역에 대해 EMS 배달보장서비스 제공	4.(표) 대상지역: **11개** 국가 우정당국간 공동시행 - **11개** 우정당국이 모든 지역에 대해 EMS 배달보장서비스 제공

붙임 2 금융상식 수정 사항

【 예금상식 】

□ 공통사항(용어 변경)

기존	수정
"공인인증서"	**"공동인증서"** **(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)**

□ 167페이지

ㅇ 2. 우편환·대체

기존	수정
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 계좌를 통하여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·공과금·할부금 등 수납, 각종 연금·급여 지급, 공과금 자동 이체 및 수표 발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.	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 계좌를 통하여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·공과금·**~~할부금 등~~** 수납, **~~각종 연금·급여 지급, 공과금 자동 이체 및 수표 발행~~**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.

□ 200~201페이지

ㅇ 3-5-2. 고객확인 대상

기존	수정
ㅇ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 원(미화 1만 불)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,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② 2천만 원(미화 1만 불 상당액)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	ㅇ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**1천 5백만 원**(미화 1만 불)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,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② **1천 5백만 원**(미화 1만 불 상당액)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

【 보험상식 】

□ 212페이지

ㅇ 1-5. 보험료의 할인

기존	수정
ㅇ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대상상품 - (무)우체국하나로OK보험 2007, (무)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2007, (무)우체국통합건강보험 2007	ㅇ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대상상품 - (무)우체국하나로OK보험 2007, (무)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2007, (무)우체국통합건강보험 2007, **(무)온라인정기보험**

□ 부 록

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0. 12. 29.)
-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(2020. 12. 17.)